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8일 11시 26분



# 목차


목차	2
공지사항	3
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로 사적모임 인원 단일화 등 행정명령 안내	3

## 비수도권 유행 확산 우려로 사적모임 인원 단일화 등 행정명령 안내

2021.07.19 조회수 2,489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담당자 김대건 연락처 061-659-3236

- 적용지역 : 전라남도 전 지역
- 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6조제4항, 같은 법 제46조제3호, 제49조제1항 각 호
- 처분대상 : 불임
- 처분기간 : '21. 7. 19.(월) 00:00 ~ 8. 1.(일) 24:00
- 처분내용 :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등 행정명령 시행
  - ▶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
    - 예외사항 :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등
  - ▶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
  - ▶ 민주노총 서울집회(7월 3일)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
    -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민주노총으로 통보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
  - ▶ 수도권 등 타권역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
  - ▶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
    - \* 유흥시설 : 유흥주점, 클럽(나이트)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, 노래연습장
  - ▶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내 외국인 포함 주1회 진단검사 권고
  - ▶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
    - 주요내용 :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수용인원 제한 등
    - \* 영업시간 제한(24시~05시) 및 수용인원 제한(6m<sup>2</sup>→8m<sup>2</sup>당 1명) 등
    - \*\* 단,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경우 50%이내 허용
-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, 제4항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 20210718 행정명령서(직인)(최종).hwp (2100 hit/ 288.0 KB) ↓[미리보기](#)

목록

이전글

여수시 청년일자리카페 임시 휴관 알림

다음글

이순신도서관 4차 산업교육「상상창작소」4기 참여...

---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# Yeosu Web Contents

